

감사도시 포항 2013  
영일만르네상스를 향하여



# 2013년도 포항시 중소기업육성시책

po<sup>h</sup>ang  
Thank you





## Contents

▣▣▣	I. 정책자금 지원	03
	1. 포항시	05
	2. 경상북도	14
	3. 중소기업청	28
▣▣▣	II. 기술·경영혁신 지원	45
	1. 포항시	47
	2. 경상북도	53





---

## I. 정책자금 지원

---

1. 포항시	05
2. 경상북도	14
3. 중소기업청	28



## 포항시

## 1.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로서 제조업, 벤처기업, 건설업체에 대하여 운전자금을 융자추천하고 이자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안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 지원근거

- 포항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 포항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협약서

## □ 용자규모

- 융자추천액 : 875억원(이자보전 : 일반업체 3%, 우대업체 5%)
  - 포항시 : 730억원, 경상북도 : 145억원
- 협력은행(11개 은행)
  - 대구, 우리, 기업, 하나, 국민, 신한, 외환, 한국씨티, 부산, 농협중앙회, 스탠다드차타드

## □ 중소기업 운전자금 세부추진 계획

## 1. 운전자금 지원

## 1. 지원대상

포항시내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제조업, 벤처기업, 건설업(일반·전문)을 영위하는 업체

- 가. 우수·유망 중소기업체,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 나. 산업단지 입주업체
- 다.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 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 마.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관련 또는 시설구조 개선업체
- 바. 가동중인 일반 중소기업체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업체

## 2. 용자추천 제외대상

- 가. 신청일 현재 용자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나. 휴·폐업 또는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용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 다.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우리시 지방세 체납업체
- 라. 동일업체 연속지원은 가능한 배제하고 신규업체 우선지원

## 2 용자지원 한도액

### 1. 일반업체 : 3억원 이내(매출규모에 따라 차등추천)

년간매출액	3억원 미만	5억원 미만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용자한도액 (매출액 범위내)	150백만원	200백만원	250백만원	300백만원

### 2. 우대업체 : 5억원 이내 (단, 매출액이 5억 이상인 경우 추천가능)

- 가. 여성기업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체
- 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해당업체
- 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해당업체
- 라. 타시군에서 우리시로 이전한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이전 2년 이내 업체)
- 마. 최근 2년 이내 국가 및 자치단체(시장, 도지사) 포상받은 업체
  -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중기청장 포함)이상 수상업체(최근 2년 이내)
  - 경상북도 시상에서 ‘우대업체’ 인정 수상업체(최근 2년 이내)
  - 포항시 중소기업대상, 이달의 우수기업상(최근 2년 이내)

## 3 용자지원 조건

### 1. 상환기간

- 가. 1년으로 하되 “금융기관” 이 정하는 내규에 따라 업체가 원할 경우 최장 3년 이내로



협의(금융기관과 업체간)후 기간연장 가능하며, 수시 또는 일시상환 할 수 있다.

※ 단, 기간연장 할 경우 기간연장일부터는 이차보전에서 제외

나. 대출금리 : 은행별 일반 대출금리(변동금리 적용)

다. 대출기한 : 용자추천일로부터 120일 이내

※ 2013. 12. 31까지 반드시 대출 완료하여야 함.

## 2. 변경사항

가. 업체에 변경사항 있는 경우 기업유치과로 15일 이내 서면 통보

나. 용자지원 기간 중 타시도로 이전 할 경우 이차보전 불가

※ 타시도로 이전 할 경우 이전전일까지 이차보전 함.

## 3. 대출방법

가. 시 운전자금 용자추천 통보 공문서 지참 120일 이내 협약 은행의 본점 및 각 해당 지점에 대출신청

※ 대출 실행후 은행변경은 불가

1) 기한내 대출 받지 못할 경우 실효되며, 당해연도 재추천 불가.

2) 대출은행을 달리하여 분할대출 불가(동일은행간 분할은 가능)

나. 대출에 따른 담보는 물건담보, 신용담보(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등 은행의 자체 여신 규정에 따라 제공

보증서 발급기관		
보증기관	전화	비고
경북신용보증재단 <a href="http://www.gbsinbo.co.kr">http://www.gbsinbo.co.kr</a>	054)283-2730(포항)	
신용보증기금 <a href="http://www.kodit.co.kr">http://www.kodit.co.kr</a>	054)271-6413(포항)	
기술보증기금 <a href="http://www.kibo.or.kr">http://www.kibo.or.kr</a>	054)275-3961(포항)	

## 4 용자지원 신청

### 1. 접수처

- 가. 포항시청 기업유치과 기업지원담당(☎ 270-2423)
- 나. 기업지원상담센터(☎ 270-3800)

### 2. 용자추천

- 가. 정기 : 설 및 추석
- 나. 수시 : 매주 1회 이상

### 3. 구비서류

#### 【공통서류】

- 가. 중소기업운전자금 용자추천 신청서
- 나. 중소기업운전자금 운용계획서
- 다.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신고서)
-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 【우대업체】

- 가. 수상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나. 타시군 이전업체는 이전 소재지 구공장등록증 사본
- 다. 장애인 기업체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업종별 구비서류】

- 가. 건설업 : 건설업면허증 사본 및 공사기성실적증명서
- 나. 벤처기업 : 벤처기업확인증명원
- 다. 제조업 : 공장등록증명원
  - 임차공장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단,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과 건축물관리 대장 첨부)

## 5 처리절차

기업체 신청 ⇒ 접수 및 용자추천여부 결정(시) ⇒ 은행 및 기업체통보 ⇒ 대출실행  
⇒ 대출실행결과 통보(해당은행 ⊕ 포항시)

## 6 용자지원업체 사후관리

1. 지원업체에 대한 가동상황 수시 파악
2. 용자협약은행에 대하여 대출 실행 시 운전자금 목적 외 대출금지 지시

### □ 이차차액보전금 교부

#### 1 이차보전금 예산

1. 이차보전 지원예산 : 31억원
2. 운전자금보전을 : 일반업체 3%, 우대업체 5%(1년간)

#### 2 차액보전금 교부

1. 지급기간 : 대출일로부터 1년간
2. 보전기간 : 대출일로부터 1년간  
※중도상환 : 상환전일까지, 휴·폐업, 부도시 가동일까지
3. 지급시기 : 매반기(상반기 8월, 하반기 2월)
4. 지급방법 : 용자협약(취급)은행(모점)에 일괄지급
5. 지급대상 : 운전자금을 대출받고 실제 가동하고 있는 업체  
※부도·폐업·휴업 등으로 가동중지 된 업체는 가동일까지 이차보전
6. 실태(가동)조사 : 시 및 해당은행에서 실태(가동)조사  
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의 과세유형 휴·폐업자 조회로 실제 가동 사실 확인 점검  
나. 실제가동 현지 확인 등 은행의 대출지급 정지 업체 제외

### □ 기타 행정사항

#### 1 홍보계획

1. 용자지원 세부추진계획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널리 홍보
2. 홈페이지 게재 및 언론보도를 이용한 홍보

#### 2 구비서류 심사 철저

1. 공장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및 개별구비서류 확인 철저
2. 신청서 제출 시 대출에 따른 담보능력의 유무 검토와 대출은행과 사전 협의에 대한 안내

### 3 협약은행 업무협조사항

#### 1. 포항시

- 가. 2013년 중소기업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은행간 협약체결
- 나. 신청업체 융자추천 대출은행 융자승인 통보
- 다. 협약은행 대출실행 후 융자실적 통보 요청

#### 2. 협약은행

- 가. 포항시와 협약체결 사항 검토 후 협약서 제출
- 나. 시 승인통보에 의한 융자추천업체 은행 대출 실행
- 다. 협약은행은 대출실행 후 통보양식에 의거 융자실적 통보
- 라. 중소기업자금 이차차액보전금 교부시 은행자료 확인 및 검토
- 마. 운전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사후관리 철저

#### 3. 지원절차

신청(업체) ⇒ 접수 및 융자추천 서류 검토 ⇒ 융자추천승인통보 ⇒ 은행 및 업체통보  
⇒ 대출실행(은행)

## 2.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 I 추진배경

-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방기업 신·증설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 II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III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1월~12월
- 지원대상 :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투자기업 및 신·증설을 위하여 투자한 지방기업
- 지원기준(국비70%, 지방비 30%)
  - 지방이전기업 : 입지40%, 설비 10%
  -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 : 설비 10%
- 사업비 : 1,193백만원(광특 955, 도비 71, 시비 167)
- 추진계획
  - 신·증설 투자기업은 선도, 전략 및 특화 업종에 한해 지원
  - 신규고용을 많이 할수록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
  - 투자보조금 지원기업 사후관리
    - 지자체 : 관리대장 비치, 투자이행(저당권, 가등기)확보
    - 기 업 : 7년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인원 3년 유지 등

### 3. 공장설립(창업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중소기업의 신규투자 및 고용창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공장설립(창업) 등으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조금을 지원

#### I 관련법규

- 포항시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제18조
- 포항시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

#### II 지원대상 기업

- 공장설립(창업)승인 후 4년 이내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 하여 내국인을 신규로 10명 이상 고용하는 다음 각호의 기업
  1. 산집법 제15조의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12월 이내 신규고용 인원
  2. 제조업 영업하는 중소기업(대기업 제외)
  3. 공장설립(창업)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4.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지식경제부, 경북도 등 타기관과 타법에 의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제외

#### III 지원금액

- 지원금액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20인을 초과 하는 인원 1인당 월 30만원
- 예산 범위내에서 6개월간 지원하며 기업 당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2013년 관련예산 : 81백만원)

---

※ 중소기업 : 20명 초과 신규고용인원 × 100만원 × 6개월

---

## Ⅳ 지원절차

- 보조금 신청
  - 중소기업은 공장설립(신규, 증설) 완료 후 12월 이내 시장에게 고용보조금 신청서 제출(신규 고용 소명자료 첨부)
- 보조금 지급
  - 시장은 투자금액, 고용인원 등 지원요건 충족여부 등 점검후 예산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에게 보조금 지급

## Ⅴ 사후관리

-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
  -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을 3년 이내 해고하는 경우
- 기타사항
  - 보조금 지원기업 D/B화 및 관리대장 작성 관리
    - ⊕ 신청자격 유지여부 정기적 실태조사
  - 기타사항은 포항시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적용

## 1.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시설현대화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하여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

### I 용자규모 : 1,200억원(은행협력자금)

○ 상반기 800억원, 하반기 400억원

### II 용자 지원계획

#### ○ 용자처리 절차

- 용자지원계획 수립(경상북도) ⇒ 접수·평가·추천(경북경제진흥원) ⇒ 용자시행(취급은행)

#### ○ 신청대상 : 경상북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이며,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 또는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창업 3년 미만 기업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으로서
  -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용도를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건축허가 받거나 신고한 기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정한 고부가가치 지식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
  - ※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정한 영상물의 제작 등에 관련된 산업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 용자 제한대상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 휴·폐업 중인 기업
-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신청한 기업
- ◇ 동일 기업이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용자신청일 현재 이자금을 포함하여 기업당 50억원(용자잔액)을 초과하는 기업
- ◇ 시설자금의 경우 동일사안에 대하여 타 정책자금에서 지원받은 기업
- ◇ 최근 결산 재무제표상 매출액 5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금 8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 최근 년도 3년 이내 1회 이상 자금의 목적외 사용으로 용자승인이 취소된 기업
- ◇ 최근 년도 3년 이내 2회를 초과하여 용자추천을 받은 기업(대출여부와 관계없음)
- ◇ 용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서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기업(신청연도를 달리하는 경우는 예외)

## ○ 용자 지원사업 범위

### 가. 시설자금

- 사업장 신축 및 부지 매입비(창업 후 3년 미만 기업)
  - 부지매입비는 공장신축비와 시설부분을 포함하여 신청한 업체에 한함.
  - 사업장 신축은 공장, 물류창고, 연구소 등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만 인정
- 사업장(건축물) 매입비(창업 후 3년 미만 기업)
  - 법원(또는 자산관리공사, 은행 등)의 경매를 통한 매입만 해당됨.
-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창업 후 3년 미만 기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물류현대화에 소요되는 자금으로서 생산설비, 물류시설, 시험검사장비, 연구개발 장비 등의 신규 설치(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중고 시설 제외)

- 기존 사업장의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체의 시설투자 자금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구조 개선에 필요한 자금
- 타도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본사와 사업장을 동시에 이전하는 기업에 한함)
  - 사업장 신축 및 생산시설 신규 설치(구입)에 필요한 자금
  - 신청기한 : 이전 예정일부터 이전완료 후 1년 이내(증빙자료 첨부)

#### 나. 운전자금(시설자금과 연계하여 신청)

- 시설투자와 연계하여 초기 창업비용, 시제품 생산, 원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 부지매입비,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은 운전자금과 연계지원 불가

#### ○ 용자조건

- 대출금리 : 4.1%(변동)
- 용자한도 : 11억원 이내
  - 시설자금 : 8억원 이내(소요자금의 75% 범위 이내)
  - 운전자금 : 3억원 이내(시설자금과 연계신청되어야 함)
    -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은 연간 매출액(추정 매출액)의 25% 범위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에 의한 최근 3개월간 매출액 이내(시설자금 초과 불가)
    - 창업 후 3년 이상 기업은 시설자금 신청금액의 30% 이내
- 용자기간
  - 시설자금 : 8년(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운전자금 : 3년(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용자 전제조건
  - 대출취급 은행에서 제시하는 조건(부동산담보 또는 보증서 제공)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용자신청 전 거래은행과 사전협의 후 신청
- 대출유효기간 : 추천일로부터 6개월
  - (대출절차 진행 중일 경우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 ○ 자금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매월 1일 ~ 10일까지(공휴일제외, 자금소진시까지)
- 접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구미시 임수동 92-30)
- 결과통보 :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경제진흥원 → 신청업체 및 은행)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용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추정 재무제표 1부
- 공장등록증명원 1부(500㎡ 미만인 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
-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공장신설 승인서 1부(창업기업)
-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입주계약서 1부(입주기업에 한함)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대출상당 확인서 1부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1부
- 기타 용자심사에 필요한 서류

### 【자금용도별 제출서류】

- 건축자금 :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1부, 계약서 및 내역서 1부  
시공업체의 사업자등록증·면허증 사본 1부
- 부지매입자금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공시지가 확인원 1부
- 공장매입자금 : 낙찰허가증명서, 잔금납입통지서, 감정평가서 사본 1부
- 임차보증금 : 임대차보증계약서 1부
- 기계구입자금 : 견적서 및 계약서 사본 각 1부  
(외국산일 경우 Offer Sheet)
- 연구개발자금 : 연구(기술)개발 증빙서류 1부

## ○ 용자지원업체 심사 및 평가

-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 지원대상 여부 등 기본요건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성, 성장성, 재무건전성, 지역기여도,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다만, 창업기업(3년 이내)은 평가를 생략하되,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성, 대출 실행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용자승인 여부를 결정함.
- 용자지원업체 선정 :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기업을 용자승인업체로 결정하고 해당기업에  
통보
  - ※ 자금이 부족한 경우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신청자금 심사기준
  - 국산시설은 견적서 또는 계약서상에 표시된 시설구입가격(자체 제작 시설은 제작에 소요되는 부품 및 자재구입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외국산시설은 C.I.F 가격(신청서류에 C.I.F 가격 이외의 가격이 표시된 경우에는 신청 서류상의 표시가격)
  - 공장설립에 소요되는 건축비 및 부대시설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
  - 시설자금은 계약금액 기준으로 산정하되 이미 지불된 계약금액, 중도금을 제외한 잔여 금액
- 대출취급은행 : 협약(약정) 체결 은행

## ○ 용자승인 취소 및 자금 회수 조치

- 자금의 목적 외 사용, 휴폐업된 업체, 부도업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기업, 경북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은 관련 조례에 따라 용자승인 취소 후 자금 조기 회수

---

◆ 문 의 처 : 경상북도 기업노사지원과 금융지원담당(☎053-950-3587)  
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50)  
동부(포항)지소(☎054-275-2966)

◆ 홈페이지 : <http://www.gepa.kr/>

---

## 2.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이차보전)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 경영안정화 도모

### I 용자규모 : 7,163억원(은행 협력자금)

#### ○ 용자 취급은행 : 14개 협력은행

-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신한, 씨티, 우리, 외환, 하나 은행
- ※ 도의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 용자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물건담보, 신용담보 등 제공).

### II 세부 지원계획

#### ○ 용자지원 대상

- 경상북도 내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용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체
  -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체
  - 운송사업 허가증을 보유한 운수업체(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체
  - 관광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관광숙박시설업체(단, 여관업은 제외)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단, 자동차 부분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제외)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등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업체

## ○ 용자조건 및 한도

### ● 용자조건

- 상환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이차보전율 : 3~5%(시군별 별도 적용)
- 대출기한 : 당해 연도에 한하며 용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20일 이내  
※ 2013. 12. 31까지 반드시 대출 완료하여야 함.

### ● 용자한도액

- 일반업체 : 3억원 이내(대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 연간매출액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150백만원
  - " 3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200백만원
  - "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250백만원
  - " 50억원 이상 : 300백만원
- 우대업체 : 5억원 이내(대출액에 관계없이 5억원까지 추천)  
※ 단, 시·군별 자금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 매출액은 도내 사업장 매출액 기준, 매출액 1억 미만 업체는 매출액까지만 용자 추천 가능

### ● 용자한도 우대업체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최근 2년 이내)
-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중기청장 포함) 이상 수상업체(최근 3년 이내)
-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산업평화대상·고용증진대상·신성장기업·일자리창출우수기업·시니어친화기업·정규직전환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가족친화인증업체(최근 3년 이내)
- 경상북도 중소기업공동브랜드 'SILLARIAN' 선정 업체
- '경북 PRIDE상품' 선정 업체  
※ 우대업체는 경상북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될 수 있음.

## ● 용자추천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 지원가능
- 휴·폐업중인 업체,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용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 자체 시행하는 시군은 동일업체에 대하여 도분과 중복 추천 불가
- 운수업 중 용달, 개별화물 개인업자,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 관광숙박시설운영업 중 여관업은 제외
- 자동차정비업 중 자동차부분정비업(카센터),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제외
- 기관 간 중복지원 제한
  - 창업 5년 이상 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중기청자금 등을 포함한 지원기관 합계 운전 자금 대출잔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 제한

## ○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 ● 신청기간

- 정기 : 설 및 추석 1개월 전
- 수시 : 시·군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 ※ 접수기간은 시·군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시·군 중소기업지원 부서

### ● 처리절차 : 은행협의 및 신청(업체) ⇒ 접수 및 용자추천 의회(시·군) ⇒ 용자추천 결정(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추천결정 통보 ⇒ 협약 은행을 통한 대출 실행(업체)

- ※ 기업이 협약은행 중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여 대출협의 후(신청서 확인) 해당 시·군에 신청접수

### ● 신청 시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중소기업운전자금 용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차공장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건축법상 건축물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 인 기업)
-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기타 업종별로 정한 구비서류
- 우대업체일 경우 확인 서류

## ○ 용자추천 및 대출방법

### ● 용자추천

- 정기 : 설 및 추석, 시군별 운영금액의 각 40% 정도 추천
- 수시 : 월 2회(매월 5일, 20일 2회 추천결정)
- 연간 용자규모 및 업체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접수 추천

### ● 대출방법

- 용자 추천 통보서를 지참하여 120일 이내에 협약은행 본점 및 각 지점에 대출 신청
  - ※ 대출기한 내에 용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되며, 당해 연도 재추천 불가
- 은행을 달리하여 분할대출 금지(동일은행 간 분할 가능)
- 대출은행 변경 시 자금대출 전에 해당 시군에 신청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변경 승인 ⇒ 대출
  - ※ 대출 실행 후 은행변경은 불가

---

◆ 문 의 처 : 경상북도 기업노사지원과 금융지원담당(☎053-950-3591)  
 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70)  
 시·군 중소기업지원부서

◆ 홈페이지 : <http://www.gepa.kr/>

---



### 3.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기술평가보증으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벤처산업 육성

#### I 용자지원 계획

##### ○ 지원규모 : 30억원

-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자금 중 일부

##### ○ 지원대상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경상북도가 지정한 경북스타벤처기업
  - 경상북도 내에 소재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경상북도 내에 소재한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 경북하이테크빌리지·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구미전자정보기술원·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한국섬유기계연구소 입주기업
- ※ 본사 또는 사업장이 경북도내에 있는 기업

##### ○ 용자조건

- 금 리 : 연리 3%
- 용자기한 :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용자금액 : 업체당 3억원(시설 2억원, 운전 1억원)
  - 경북스타벤처기업에 한해 5억원(시설 3, 운전 2) 이내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가치 평가 금액만큼 용자
  - 지원계획 금액보다 신청금액이 초과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지원

## ○ 용자절차

- 경상북도경제진흥원(접수) ⇒ 기술보증기금(평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추천) ⇒ 은행(대출)
  -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용자승인 통보(지연 시 신청업체 통보)

## ○ 대출취급기한 : 용자지원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사전심사신청서류

- 벤처기업육성자금 용자신청서 1부
- 벤처기업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관련 협약서 1부
- 신용보증 사전심사 신청서 1부
- 기술사업계획서 2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 1부
- 창업보육센터 등 입주기업 확인서 1부
- 경북스타벤처기업지정서 사본 1부
- 신용조사 관련 기초자료(신용보증 신청기업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 신청서류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http://www.gepa.kr))참조

## II 벤처기업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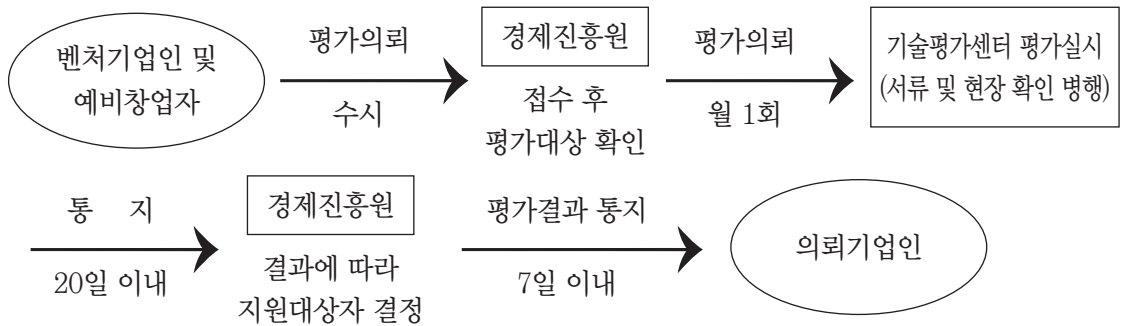
벤처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전문으로 평가하는 『기술보증기금』과 평가제반사항을 협약 체결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사업자 자금 지원

### ○ 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부속기관인 대구기술평가센터

### ○ 평가비용

- 평가요금 : 1건당 20만원(업체 부담)
- 요금납부 : 기술평가료는 평가 후 의뢰기업인이 계좌 입금

## ○ 평가체계



## ○ 평가 및 선정

-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성, 수익성, 시장성,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보증하여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선정

## ○ 주요평가내용

항 목	내 용	
평가결과	• 사업성공가능성	• 지원금액, 평점 및 등급
경영주의 기술능력	• 재무상황 • 대표자 경험수준	• 대표자 경영능력 • 사업운영(또는 창업 준비) 상태
기술수준	• 기술의 난이도 • 기술경쟁력 • 기술내용 및 활용범위	• 기술의 완성도 • 대체기술 출현가능성 등
기술(제품)의 시장성	• 시장규모 • 경쟁상황	• 시장성격 • 가격경쟁력
기술(제품)의 수익성	• 수익전망 • 추진일정의 적정성	•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 파급효과
종합의견	• 각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의견	

◆ 문의처 : 경상북도 신성장산업과(☎053-950-3224)  
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50)

◆ 홈페이지 : <http://www.gepa.kr/>

## 4.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이차보전)

담보력이 미약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자생력 강화

### ○ 용자대상

- 경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 용자조건

- 용자규모 : 250억원(은행협력자금)
- 지원한도 : 2천만원(우대업체 : 5천만원 이내)
- 우대업체
  - 고용창출 우수업체 : 신청시점 기준 전년도 말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된 업체
  - 장애인업체 : 사업주가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
- 대출금리 : 약정금리에서 이차보전을 감한 금리
- 이차보전을 : 2%(1년간)
- 상환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취급은행 :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씨티은행, 하나은행
- 대출취급기한 : 용자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2013. 12. 31.까지 반드시 대출 완료하여야 함)

### ○ 용자지원 제외대상

- 동 용자지원으로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업체로 대출일로부터 2년 미경과 업체
- 시·군 특례보증 수혜자로서 2년 미경과 업체
  - ※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 자금은 중복 가능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신청한 업체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제한 업종)

### ○ 용자신청 및 처리

- 신청기간 : 연중수시(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도내 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각 지점
- 제출서류
  - 용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처리절차 : 신청(업체) ⇒ 보증상담 및 지원한도 결정(신용보증재단) ⇒ 보증서발급 ⇒ 대출실행(은행) ⇒ 이차보전(신용보증재단)

### ○ 경북신용보증재단(영업점) 안내

센터명	소재지	관할 시·군	전화번호
영업부(본점)	구미시 이계북로 7 (경상북도경제진흥원 1층)	구미, 군위, 칠곡, 고령, 성주	054-474-7100
포항지점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2층)	포항, 영덕, 울진, 울릉	054-283-2730
경산지점	경산시 원효로 15 (농협은행 경산시지부 3층)	경산, 청도	053-811-0790
안동지점	안동시 남문로 20 (대구은행 안동지점 3층)	안동, 영양, 예천, 청송, 의성	054-854-3300
경주지점	경주시 중앙로 32 (국민은행 경주지점 2층)	경주	054-777-0140
영주지점	영주시 번영로 149 (대구은행 영주지점 2층)	영주, 봉화	054-631-8300
김천지점	김천시 김천로 154 (농협은행 김천시지부 3층)	김천	054-433-1300
영천지점	영천시 시장로 45 (대구은행 영천영업부 3층)	영천	054-336-6800
문경지점	문경시 중앙로 141 (농협은행 문경시지부 3층)	문경, 상주	054-556-7400

◆ 문의처 : 경상북도 기업노사지원과 금융지원담당(☎053-950-3591)  
경북신용보증재단(☎054-474-7100)

# 중소기업청

## 1. 창업기업지원자금

### □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

### □ 용자규모

- 12,500억원

### □ 신청대상

-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1인 창조기업 포함)
  - (창업기업지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용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재창업)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 <1.공통사항>마. 용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 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용자제한)

- 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용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기 재창업자는 영업실적 요건 예외)
-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 ③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 ④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용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 용자범위

###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구매)
  -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1회로 한정 지원
- 부지매입비 및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과의 납품계약(계약서 등)에 근거한 제품 생산 비용 등 소요자금
    - \* 단, 구매기업의 계약이행능력,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용자를 제한할 수 있음

## □ 용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기준금리)
  -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7%(고정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일 이내(최대 180일)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구분 없이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단, 재창업자금 운전자금은 10억원,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 협동화 승인기업 : 추진주체 50억원(운전 5억원), 참가기업 45억원(운전 5억원) 단, 협업화는 추진주체 40억원(운전 30억원), 참가기업 30억원(운전 5억원)
  - \* 협업사업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자금 5억원)참가기업 40억원(운전자금 5억원)
  -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회전한도내에서 계약금액의 90% 이내(최대 5억원)
  -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 **융자방식**
  - (창업기업지원)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재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 및 도덕성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단, 기업편의에 따라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가능)
  - \* 단,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심사(신용회복위원회)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대출
  - (청년전용창업)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조정형) 또는 취급은행(우리은행)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대출
  -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 \* 민간금융 매칭형 : 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으로 지원(1월중 취급은행을 추가지정 예정)

## 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 □ 융자규모

- 3,000억원



## □ 신청대상

- 전략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기업
  - \* 전략산업 : 녹색·신성장동력산업(별표3, 3-1), 뿌리산업(별표4, 4-1), 부품·소재산업(별표5), 지역전략·연고산업(별표6),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바이오산업(별표9),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10)
  - \* 최근 3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 용자범위

-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 비용 등

## □ 용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용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 3. 신성장기반자금

#### □ 사업목적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 □ 용자규모

- 6,350억원

#### □ 신청대상

- ※ 최근 3년 이내 신성장기반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용자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업력 5년 이상 중소기업
  - ※ 단, 업력 5년 미만 기업 중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용자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 단, 업력 5년 미만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지원자금 용자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창업기업지원자금으로 용자

#### □ 용자범위

#####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영위 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은 사업장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당 1회에 한해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허용

-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부지매입비 및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무역·수출 안전시설

## ○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용자받은 기업중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30% 이내)
  - \* 혁신형기업(별표11),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시설자금의 50% 이내에서 초기 가동비 지원
  -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영위 기업, 협동화(협업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해양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 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용자 가능

## □ 용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 5억원)
  -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 협동화 승인기업 : 추진주체 50억원(운전 5억원), 참가기업 45억원(운전 5억원) 단, 협업화는 추진주체 40억원(운전 30억원), 참가기업 30억원(운전 5억원)
  - \* 협업사업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자금 5억원) 참가기업 40억원(운전자금 5억원)
- **용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4. 긴급경영안정자금

### □ 사업목적

- 경영애로 해소, 수출품 생산비용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 조성

### □ 용자규모

- 950억원

### □ 신청대상

- 긴급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 지원
  - (긴급경영안정사업) 재해 피해를 입거나 일시적으로 경영애로 상태에 있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용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용자 제외 단, 해외조달 시장 참여 중소기업은 신청 가능)

### □ 용자범위

#### ○ 긴급경영안정사업

- 자연재해 또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 금융기관의 Work-out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진공 집중관리기업, 자본잠식 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 KIKO 등 환헤지 파생상품 피해 기업 또는 외화대출에 따른 피해 기업
  -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업
  -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대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협력 중소기업
  - 전년동기(동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서, 전년도 말 또는 직전분기말 당시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주요거래처의 도산 또는 결제조건 악화에 따른 매출채권 회수 지연기업
  - 기술유출 피해기업
  - 중소기업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1.공통사항> 마. 용자제한기업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용자제한)

## ○ 수출금융지원사업

-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 □ 용자조건 및 방식

### ○ 긴급경영안정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6%p 가산(기준금리)  
\* 재해중소기업은 연 3%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용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 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 ○ 수출금융지원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6%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 후 수출환 어음 매입시 정산

- \*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 \* 단,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대출한도** : 기업당 10억원 이내
  -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정 양허기관, FTA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는 기업
  - \* 글로벌강소기업 :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 5천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선정
-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일반기업은 최대 10억원,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최대 30억원)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이내
-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
  - \* 수출실적 기준 이용기업은 10억원(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30억원)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 5. 사업전환자금

### □ 사업목적

-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회복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 지원 도모

### □ 용자규모

- 1,700억원

## □ 신청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별표12)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현 영위업종	전환 진출업종
모든 업종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제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단, (별표1) 업종 제외)

- \* 『서비스업』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35%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이고, 향후 축소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 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경우, <1.공통사항> 마.용자제한기업 ⑥항, 항 적용에서 예외
    -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 별표13
    - 서비스업 중 지원제외대상 : 별표14

## □ 용자범위

###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감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1회로 한정 지원

###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기타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 용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 단, 업종전환의 경우 기업당 연간 40억원

## 6.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 사업목적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 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

### □ 용자규모

- 1,500억원

### □ 신청대상

- 이익공유형 대출, 성장공유형 대출로 구분 지원
  - (이익공유형 대출)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기업
  - (성장공유형 대출)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 □ 용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 용자조건

### ○ 이익공유형 대출

- **대출이자** :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로 구성
  - (고정이자) 기업의 영업실적에 관계없이, 대출잔액에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 고정금리는 대출시점에서 다음의 『기준금리』를 적용한 신용대출 금리에서 2%p를 차감(대출기간 동안 고정)
- **업력 5년 미만 기업**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
- **업력 5년 이상 기업(시설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
- **업력 5년 이상 기업(운전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6%p 가산
  - (이익연동이자) 대출일 이후 각 결산기 영업이익의 3%
- **업력 5년 이상 기업(시설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
- **업력 5년 이상 기업(운전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6%p 가산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 성장공유형 대출(대출방식 : 전환사채 인수)

- **대출금리** : 표면금리 1%, 만기보장금리 4%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업력 5년 미만인 기업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10억원)

## 7.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 □ 사업목적

- 생산 및 판매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조성

### □ 용자규모

- 5,000억원

##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 용자범위

- 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및 시장개척 비용
-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에 한함)

## □ 용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금융회사가 결정한 대출금리에 연리 2.0~3.0%p\*를 보전한 금리  
\* 혁신형 중소기업(별표11) 및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은 3.0%p, 그 외 기업은 2.0%p 이차보전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①전기 대비 10%이상 고용증가기업, ②국가 또는 자자체 인증 고용창출우수기업, ③고용확대로 세제지원을 받은 기업  
- 이차보전 우대(3.0%p)는 1년간 적용(중진공에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시 1년 단위로 우대 적용)
- **대출기간** : 3년 이내(만기 일시상환)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 **용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금융회사(대출취급은행)\*에서 대출  
- 자금신청·접수 시 대출취급은행의 사전상담 확인서 제출

## 8. 소상공인지원자금

###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 고용유지 및 국가경제의 균형발전 지원

### □ 용자규모

- 7,500억원

- 소상공인지금, 소공인특화자금으로 구분 지원
  - (소상공인지금) 5,000억원
  - (소공인특화자금) 2,500억원

## □ 신청대상

### ○ 소상공인지금(소상공인 일반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으로 구성)

-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 (소상공인 일반자금)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창업·경영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소상공인컨설팅 수혜자, 나들가게,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수혜자, 신사업 개발 창업자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특화자금) 협업화 지원사업 참여업체, 성장유망형으로 선정된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및 재해피해 소상공인
- \* 단, 소상공인지원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5)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소공인
  - \* 단, 주된 사업의 업종이 용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기업은 용자 대상에서 제외

## □ 용자범위

### ○ 소상공인지금(소상공인 일반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으로 구성)

- 소상공인 창업 후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 ○ 소공인특화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토지구입비 제외)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임차보증금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 용자조건

### ○ 소상공인자금(소상공인 일반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으로 구성)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기준금리)
  - \* 단, 재해 소상공인,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연3%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단,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대출기간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소상공인 일반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 최대 7천만원
  - \* 단, 나들가게 및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은 최대 1억원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 단,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2년 거치 후 5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은행(19개)
  -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한국씨티·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SC  
제일·제주은행·농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수협중앙회·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

### ○ 소공인특화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억원(운전자금은 1억원)
- 대출취급 기간 : 중소기업진흥공단

## □ 용자절차

### ○ 소상공인자금(소상공인 일반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으로 구성)

- 신청·접수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 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 **소공인특화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 II. 기술·경영혁신 지원

---

- |         |    |
|---------|----|
| 1. 포항시  | 47 |
| 2. 경상북도 | 53 |





## 포항시

## 2-1. 국제 품질인증(ISO9001/14001) 획득 지원

## □ 사업목적

수출기반이 취약하여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품질인증이 없어 수출에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 국제 품질인증 획득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확대

## □ 사업개요

## ○ 예산규모 : 27백만원(시비)

- 지원업체 : 9개업체
- 지원금액 : 기업당 3백만원
- 지원분야
  - ISO9001 : 설계, 개발, 제조, 설치 등 품질시스템 인증
  - ISO14001 : 생산, 유통 활동에 따른 기업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 2-2. 지역산업체 산업재해 예방교육

## □ 사업목적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사고, 직무스트레스 관리 및 보건 의식 함양으로 산업 재해 사전 예방

## □ 사업개요

### ○ 예산규모 : 50.4백만원(도비 50%, 시비 50%)

- 교육시간 : 안전관리담당(년16시간 이상), 사무직종사(년12시간 이상)
- 교육인원 : 지역 중소기업체 근로자 500명
- 운영방법 : 전문기관 위탁

## 2-3.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 □ 사업목적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상품디자인에서 떨어지는 중소기업 제품의 고부가가치 실현으로 경쟁력 강화

### □ 사업개요

#### ○ 예산규모 : 13.5백만원

- 지원대상 : 포항시 소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10개업체
- 지원한도 : 1기업당 3백만원(보조 90%, 자부담 10%)
- 사업내용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 운영방법 : 전문기관 위탁

## 2-4. 개별입지 중소기업 숙원사업 바로처리

### □ 사업목적

개별입지 공장주변 배수불량, 파손도로, 안내표지판 등 중소기업 숙원사업 해결로 기업 프렌들리 문화 정착

## □ 사업개요

### ○ 예산규모 : 120백만원(도비 30%, 시비 70%)

- 대상지역 : 개별입지(산업단지) 공장 주변
- 지원한도 : 1건당 20백만원 기준
- 사업내용 : 배수로 설치, 도로포장, 공장안내표지판 및 가로등 설치 등  
※ 2012년 실적 : 청하지역 개별입지 공장 안내표지판 설치 외 11건

## 2-5.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등록비 지원

### □ 사업목적

기업인의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 사업개요

#### ○ 예산규모 : 20백만원

- 지원대상 : 포항시 소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 지원범위 : 국외출원 업체당 4백만원 이내, 국내출원 1백만원 이내
- 대상사업 : 선행기술조사, 홍보물제작,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비
- 운영방법 : 전문기관(경북지식재산센터) 위탁

## 2-6. 중소기업 신지식 전문교육 실시

### □ 사업목적

급변하는 기업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직무에 필요한 맞춤형 신지식 교육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 사업개요

### ○ 예산규모 : 13.5백만원(시비)

- 지원대상 : 포항시 소재 중소기업 CEO 및 임직원
- 교육인원 : 500여명
- 교육내용 : 기업경영, 품질, 수출, 안전교육 등
- 운영방법 : 전문기관 위탁

## 2-7. 기업애로 상담센터 운영

### □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운영에 따른 각종 애로사항 해결과 기업경영 지원을 통하여 시간적, 경제적 편의 제공

## □ 사업개요

### ○ 예산규모 : 15백만원

- 설치장소 : 포항시청 16층(2011. 9. 8개소)
- 상담인력 : 25명(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업경영지도사 등)
- 상담주기 : 월1회(매월 셋째주 목요일)
- 상담내용 :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산업재산권, 민원사항 등

## 2-8. 중소기업 우수제품 사이버홍보관 운영

### □ 사업목적

중소기업 우수제품 사이버홍보관 운영을 통한 회사홍보로 주민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확산시켜 판매 촉진

## □ 사업개요

### ○ 예산규모 : 5백만원

- 설치장소 : 포항시청 2층
- 홍보내용 : 중소기업 우수제품 및 지원시책 등
- 운영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업데이트

## 2-9. 중소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 □ 사업목적

수출기업 전문인력 상시고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통상관련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제공하여 수출 촉진

## □ 사업개요

### ○ 예산규모 : 9백만원

-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중 외국수출업체
- 지원한도 : 1기업당 1백만원내에서 통·번역비 70%
- 지원내용 : 해외 바이어 방문 수출상담, 기술·품질 관련 설명서 등
- 운영방법 : 전문기관 위탁

## 2-10. 1기업 1핵심기술 정보 제공 사업

## □ 사업목적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기업경영 환경 급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핵심 주력 기술에 대한 맞춤형정보 제공으로 기술개발 활동 촉진

## □ 사업개요

### ○ 예산규모 : 9백만원

- 지원대상 : 벤처기업, 신성장 동력기업, R&D활동이 활발한 기업
- 지원한도 : 1기업당 1백만원이내
- 지원내용 : 기술개발 전략수립, 기술정보 및 유명 아이템 제공
- 운영방법 : 전문기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위탁

## 2-11. 123기업사랑지원단 1사1공무원 멘토제 운영

## □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고 진정성 있게 해결을 통한 행정과 기업간 신뢰 구축

## □ 사업개요

### ○ 예산규모 : 비예산

- 운영일시 : 2012. 8. 1 ~ 공무원 퇴직시까지
- 멘토인원 : 934명 (1사 1공무원)
- 멘토역할 : 월 1회 전화 또는 방문 - 애로사항 청취결과 보고서 제출
- 처리방법 : 기업애로상담관 상담결정 ⇒ 해당 기업체 통보

## 1. 중소기업 신기술 실용화 지원

- 미래 지역경제의 중추역할을 담당할 핵심기술을 사전 발굴하여 조속한 상품화와 실용화를 지원
- 기술 기반시장의 선점효과와 원천기술 확보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3 ~ 12월
- 대상업체 : 3개 업체(공모에 의한 기술력 평가)
- 사업비 : 40백만원(도 30, 자부담 10)

### □ 사업내용

- 최종목표는 유용한 미활용 신기술을 활용하여 제품 생산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
- 기술실용화 위한 업체 및 고객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  
⇒ 지적재산권 등록, 기술정보제공 및 상품화 교육실시 등
- 저탄소 녹색성장 기술 등 향후 수요가 많은 신기술 육성

### □ 기대효과

- 우수한 기술력이 있으나 중소기업의 한계(자금, 홍보 등)로 인하여 상품화 하지 못하는 기업에게 한 단계 up-garde의 기회 제공
- 도내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발굴하여 상품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

◆ 문의처 : 경상북도 기업노사지원과 기술지원담당(☎053-950-3590)

## 2. 중소기업 글로벌 산업기술 연수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과 품질 향상
- 해외 선도기술 산업 벤치마킹 → 미래기술인력 양성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하반기(10일 정도)
- 대 상 : 20명 정도(지역중소기업 근무 기술인력)
  - 시군별 인원배정 : 제조업체수 50%, 근로자수 30%,  
분임조정진대회 출전팀수 20%
- 사 업 비 : 88백만원(도 40, 시군 40, 자부담 8)

### □ 추진방법

- 시군별 대상자 추천(시군 → 도), 대상자 확정(도)
- 연수대상자 연수지역 및 기업 수요설문조사
- 국외 연수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하되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여 道 승인 후 시행
  - 해외선도 기술보유 업체 방문 및 품질·기술혁신 연수

### □ 기대효과

- 해외선진기술 연수를 통한 기술개발 촉진 및 대외경쟁력 강화
-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적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

---

◆ 문 의 처 : 경상북도 기업노사지원과 기술지원담당(☎053-950-3590)

---



### 3. 경상북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 품질분임조 활동을 통한 품질혁신,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등 사례 교환
- 품질경영의 활성화와 우수분임조의 발굴포상 및 사기진작

#### □ 사업개요

- 개최시기 : 2013년 상반기(전국대회 : 하반기)
- 주요내용
  - 전년도 경진대회 수상자 및 품질경영 활동 유공자 표창
  - 분임조 현장개선 사례 발표, 우수분임조 선발 및 전시회 등
- 우수 분임조 전국대회 참가자격 부여(대상 및 최우수상)

#### □ 추진계획

- 일 시 : 2013. 5월 경
- 장 소 : 미정, 도내 적정지 선정(1~2월 중)
- 사업비 : 30백만원(도 및 전국대회)
- 참가인원 : 품질분임조 50개 팀, 600명
- 전국대회 참가 - 우수분임조
  - 일시 및 장소 : 2013. 8월 경/전북
  - 참가인원 : 3,000명 정도

---

◆ 문 의 처 : 경상북도 기업노사지원과 기술지원담당(☎053-950-3590)

---

## 4.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상품 디자인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시대 다양한 소비자 충족과 제품의 경쟁력 강화

###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3 ~ 12월
- 사 업 비 : 660백만원(국 300, 도 300, 자부담 60)
- 사업내용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개발
- 지원대상 : 자체 상품화가 가능한 중소기업 30개 업체
- 추진일정
  - 도 - 추진기관 업무협약 체결 : 2월
  - 대상업체 모집 : 3월(공개선정)
  - 사업추진 : 3 ~ 12월
  - 개발제품 성과보고 : 12월

### □ 추진방법

- 지원방법 : 매년 30개 제품 발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수탁(협약)기관 : 도,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 □ 기대효과

- 중소기업에 필요한 제품, 포장, 시각분야의 디자인 개발 지원으로 중소기업 제품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 문 의 처 : 경상북도 기업노사지원과 기술지원담당(☎053-950-3590)

---

## 5. 중소기업 인턴 사원제

-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층 실업난 해소
- 고졸·비정규직 등 취업 애로계층에 대한 고용지원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3 ~ 12월(10개월)
- 사업량 : 500명(청년 등 실업자, 여성결혼이민자, 새터민 등)
- 사업비 : 25억원(도비 7.5, 시군비 10, 업체 7.5)
- 운영방법 : 중소기업체가 청년층 등 인턴 채용 시 2개월간 1인당 월 70만원 지원 후, 정규직 채용 시 추가 4개월 지원  
 ※ 월 70만원 중 도비 30만원, 시군비 40만원
- 추진체계 : 도(기본계획 수립), 시·군(모집·선발), 참여업체(인턴채용 및 정규직 전환)

### □ 추진일정

-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침 마련 : '13. 2월
- 인턴참여자 및 참여기업 모집·선발 : '13. 2월
- 2013년 사업 추진 : '13. 3 ~ 12월
- 사업성과 분석 및 피드백 : '14. 1월

### □ 고용노동부 인턴과의 차이점

구 분	경상북도	고용노동부	비 고
명 칭	중소기업인턴사원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	
연령제한	청년우선하되, 제한없음	15 ~ 29세	
지원내역	월 70만원(도·시군)	급여 50%(80만 한도, 정규 65만)	
지원기간	인턴 2개월, 정규 4개월	인턴 6개월, 정규 6개월	
정규채용률	89.6%	85%	수료기준

◆ 문 의 처 : 경상북도 일자리창출단(☎053-950-3848)

## 기업지원 유관기관 연락처

기 관 명	소 재 지	연 락 처 (fax)	비 고
포항상공회의소	남구 상도동 10-2	274-2233-6 (283-1823)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남구 호동 627	289-5300 (289-5399)	
중소기업진흥공단동부지부	지곡 T/P본부동	223-2041 (223-2049)	
(재)경북경제진흥원동부지소	남구 해도동 232-7	275-2967 (275-2968)	
경북지식재산센터	포항상공회의소 내	274-2233	
포항소상공인지원센터	남구 해도동 232-7	231-4363 (231-4365)	
포항고용센터	북구 죽도동 618-3	280-3005 (280-3106)	
경북동부경영자협회	남구 대잠동 936-10	278-5140-3 (278-5144)	
청하농공단지협의회	북구 청하 하대리 542-2	232-0069 (232-0817)	
경북신용보증재단 동부지점	남구 해도동 232-7	283-2730 (283-2704)	
신용보증기금 포항지점	남구 상도동 10-2	271-6460 (272-1806)	
기술보증기금 포항기술평가센터	북구 죽도동 645-1	275-3961 (282-3016)	
한국폴리텍6대학포항캠퍼스	남구 괴동 1146	288-2260 (274-2098)	
대구지방노동청포항고용지청	남구 대잠동 940	271-6700 271-6760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포항지회	신용보증기금포항지점	285-3400	



